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한 통·리·반을 분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개 통·리 증설(안 별표 2)

- 당초 : 691개 통·리(통 491, 리 200)
- 변경 : 693개 통·리(통 491, 리 202)
 - 고아읍(증2개 리) : 문성레이크자이 신축(문성10리 신설)
문성태완노블리안 신축(문성11리 신설)

○ 28개반 증설(안 별표 2)

- 당초 : 4,997개 반
- 변경 : 5,025개 반
 - 고아읍(증28개 반)
 - 문성레이크자이 신축(문성10리 : 20개 반 신설)
 - 문성태완노블리안 신축(문성11리 : 8개 반 신설)

○ 신축건물 지번 변경 및 오류 정정(안 별표 9)

- 송정동(3통 신축아파트[힐스테이트] 지번 변경)

· 1~ 9반 : 송정동 37번지 → 송정동 529번지

· 10~11반 : 송정동 44번지 → 송정동 531번지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아파트 신축으로 통·리·반 조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, 2개 리 및 28개 반을 증설하여 현행 691개 통·리 4,997개 반을 693개 통·리 5,025개 반으로 조정하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지번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통·리·반을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